

서울북부지방법원 2015. 7. 10 선고 2015가단111898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청구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5. 7. 1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서울 도봉구 C 대 58.8㎡ 중 184.1분의 121.1지분에 관하여,
나. 서울 도봉구 D 대 125.3㎡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6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4.2㎡에 대한 184.1분의 121.1지분에 관하여,
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박미리

별지